

# 평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5. 03. 05(토) 평창군수(기획감사실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5. 3. 22(화)
- 다. 상정일자 : 2005. 3. 23(수) 제12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 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5.3.23) 상정·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민원봉사과장 이경식)

가. 제안이유

- 관련 법률인 「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」이 「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되므로 인해 「평창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」를 「평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」로 제명을 개정하고
- 개정된 법률에서 새로이 도입된 주택가격 공시제도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평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- 관련 법률 명칭개정으로 인한 구문 개정
  - 「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」을 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
  - 평창군 토지평가위원회를 평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로 개정(안 제1조)
-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개별주택가격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추가(안 제2조)

-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의 세부사항을 정함 (안 제3조)  
(안 제8조 내지 제9조)

### **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**

(전문위원 : 박태영)

- 본 조례는 상위법령의 명칭 및 내용의 개정으로 인해 평창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의 제명 변경을 비롯 개정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한 세부내용의 개정을 하려는 조례로써
-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
  - 제명을 「평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」에서 「평창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」로 변경하였으며
  - 상위법령인 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」 및 「동법시행령」의 위임에 따라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기능에 개별주택가격 결정과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위원회 구성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기타 형식 및 자구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**

**5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**

**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**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